

2025년 글로벌 진출을 위한 JSGP 프로그램 창업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조사, 비즈니스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 JSGP(Jeonbuk Startups Glocal Platform)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기업 글로벌 플랫폼(JSGP) 구축을 통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으로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지원대상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18.5.20.이후** (신산업창업 분야 15.5.20.이후) 창업기업
-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2025년 6월 ~ 11월 (예정)

□ 지원내용 : 글로벌 진출 지원금 최대 16백만원 지원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해외시장 진출 지원금 10백만원)
- 베트남(호치민) 메가어스 박람회 참가 지원(참가비 6백만원)
- 베트남 정부 주관 박람회(TECHFEST Vietnam) 참가 지원

□ 모집기간 : 2025년 5월 20일(화) ~ 6월 4일(수) 15:00까지

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18.5.20.이후** (신산업창업 분야 15.5.20.이후) 창업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①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②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③	5G+	⑫	바이오	㉑	이차전지
④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⑤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⑥	실감형콘텐츠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㉔	우주
⑦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㉕	차세대 원전
⑧	스마트 제조	⑰	재난/안전	㉖	양자
⑨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㉗	사이버 보안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신산업 창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의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최종 선정자에 한함)

□ 신청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舊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Ⅲ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5년 11월
- 지원내용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베트남 박람회 참가 지원

1)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금 기업별 10백만원 지원
- 지원항목
 - 제품고도화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의 출원·등록, 시험·인증비, 수출 브랜드 개발

- 해외활동비 : 국제 전시회 · 박람회 참가비, 해외 출장비, 해외 운반비 · 보험료 · 보관료

구분	항목	항목정의
제품고도화	지식재산권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시험·인증비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브랜드 개발비	· 수출 브랜드의 개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 수출 브랜드 CI 및 BI 개발,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포장디자인 등
해외활동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 국제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등록비 및 부스 임차비용
	물류비	· 창업아이템의 해외 반출, 수출시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해외여비	· 창업기업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계획서상의 해외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교통 및 숙박비만 지원 가능하며 식비 및 일비는 불가

2) 메가어스 박람회(MEGA US EXPO) 참가 지원

- 참가일정 : 2025. 8. 14.(목) ~ 8. 16.(토) ※ 현지시간기준, 2시간 시차
- 운영장소 : 베트남 호치민 푸년지구(white palace convention center)
* 215 booths(3×2.5)m 규모 장소(약920평), 공항에서 15분거리, 주차장 및 편의시설 용이
- 베트남 메가어스 박람회 창업기업 전시 부스 기업별 6백만원 지원
 - 바이어 발굴 및 미팅, 동시통역 지원 등
 - 베트남 비즈니스 및업 프로그램 참가 지원(해외 투자자 상담 등)

- ▶ 부스비(일반형) 기업 당 최대 6백만원
 - 기업 전시부스 1개, 전문 통역, 디렉토리북(통합 기업 소개자료) 제작
- ▶ 베트남 비즈니스 및업 프로그램
 - 투자사 대상 기업별 IR, 개별 비즈니스 및 후속 미팅 지원
- ▶ 주력산업 및 산업 전문분야 바이어 및 투자자 300개사 이상 참여
- ▶ KORETOVIET 센터 온/오프라인 입점 및 제품 전시 지원
- ▶ 현지 바이어 / MD 등의 요청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3) 베트남 정부 박람회 참가 지원

- 참가일정 : 2025년 11월 중
- 주최/주관 :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 국가기술기업 및 상용화 개발청(NATEC), 국가 스타트업 지원 센터(NSSC) 등
- 지원규모 : JSGP 프로그램 선정기업 중 7개사 내외
- 베트남 현지 최대 스타트업 행사(TECHFEST VIETNAM) 참가 지원
 - 창업기업 통합전시홍보관 운영 및 창업기업 제품 전시
 - 창업기업 투자 IR 및 컨퍼런스 참가
 - 베트남 창업지원 정부기관, 투자사, 바이어 등 현지 파트너 비즈니스 상담 지원

※ 박람회 개최 내용 확정 시,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TECHFEST VIETNAM >



- (일정) '25. 11. 24. ~ 11. 26. (예정)
- (내용) 기업 전시, 컨퍼런스, 투자 IR
- (주최)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lecommunication)
- (주관)
 - 국가기술기업 및 상용화개발청 (NATEC,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y Enterpreneyrship and Commercialzation Development)
 - 국가 스타트업 지원 센터 (NSSC, National Start-up Support Center)
 - 스타트업 베트남 재단(SVF, Startup Vietnam Foundation)

※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V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6월 4일(수) 15:00까지
 -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온라인 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온라인 제출
- 접수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페이지(<http://event.jbcj.or.kr>)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② '사업신청' 메뉴 선택 → ③ 글로벌 진출을 위한 JSGP 프로그램 '신청하기' 선택 → ④ 기본정보 입력(특수문자 입력 시 제출 불가) → ⑤ 신청서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파일형식 PDF) → ⑥ '온라인 접수' 제출 → ⑦ '신청-접수확인' 메뉴 선택 → ⑧ 신청정보 (신청사 업명, 이름,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력 → ⑨ '접수현황확인'

- 신청문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사업팀(063-220-8932)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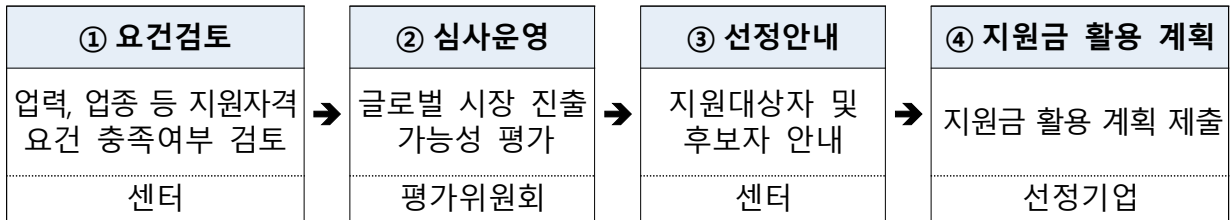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필수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구분	증빙서류	필수여부	비고
1	■ 대표자 신분증 사본	필수	-
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3	■ 창업기업 확인 서류* ① 창업기업확인서, ②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③ 총사업자등록내역 등		유효기간 기준 또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4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5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2024년도
6	■ 실적자료(매출, 수출, 투자, 특허 등)		선택

* ①, ② 서류 제출 또는 업력 및 창업기업 확인 기준 관련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 내역 상 '계속' 중인 모든 사업자등록증, 내역 상 '폐업'은 폐업사실증명원, 공동 대표일 경우 주주명부 등)

V 심사 및 추진일정

□ 심사방법 및 절차

< 심사 및 일정 >



- ① (요건검토) 신청자의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② (심사운영) 비즈니스 모델 수준, 해외시장 진출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운영 방식은 요건검토 후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③ (선정안내) 지원대상자 및 후보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 ④ (지원금 활용 계획) 지원금 활용 계획 제출 및 승인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끝.

참고 1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 1항 및 금융위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 제한에 따라, 해당 업태를 영위하는 자(기업)

연번	업태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 자문, 개발 및 판매
3	가상화폐 거래소업
4	가상화폐 개발업
5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6	가상자산 취급업
7	가상자산의 교환, 이전, 매매업
8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한 컨설팅 및 전문서비스업

* 단, 가상자산사업자 중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 업태는 추가·변경될 수 있음